

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순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번호	2294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2. 6.

발 의 자 : 정순기, 고영찬, 장규권  
정재동, 엄삐별, 고성미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우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제1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로 변경함(안 제4조)

나.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함(안 제5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기 타

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
3) 입법예고 : 2023. 2. 7. ~ 2. 13.

4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11월 18일”을 “11월 23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그”를 “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”를 “법 제14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정례회의 집회일)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·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<u>11월 18</u>일에 집회한다.</p> <p>제5조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그</u> 예산안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	<p>제4조(정례회의 집회일)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11월 23</u> <u>일</u>-----.</p> <p>제5조(심의) ① ----- ----- ----- ---- <u>법 제49조제1항에 따른</u> <u>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그</u> --- -----.</p> <p>② -----<u>법 제142</u> <u>조</u>----- ----- -----.</p>

# 현행조례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 1. 13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34호, 2022. 1. 12., 일부개정]

서울특별시 금천구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~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8.04.08., 2015.3.2., 2022.1.12.>

**제2조(회의총일수)**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15.3.2., 2021.3.18.>

**제3조(회기)**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,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·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5일 이내로 하며,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5.3.2., 2021.3.18, 2022.1.12.>

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.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<신설 2022.1.12.>

**제4조(정례회의 집회일)**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·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'08.04.08, 2012.12.31., 2015.3.2., 2022.1.12.>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·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12.12.31., 2015.3.2.>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8일에 집회한다.<개정 2021.3.18.>

**제5조(심의)**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개정 2008.04.08., 2015.3.2., 2021.3.18, 2021.1.12.>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'08.04.08., 2015.3.2., 2021.3.18., 2022.1.12.>

**제6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2008.04.08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제728호, 2012.12.31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제802호, 2015.3.2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제1149호, 2021.3.18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제1234호, 2022.1.12.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 법령

□ 지방자치법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### 제53조(정례회)

-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- 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